행정심판 주요 재결 사례(2021.9)

□ 상시 기능사 1회 미용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시험 및 해당시험 수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변상하라.

○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시험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민원 회신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시험의 재시험 및 이 사건 시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

○ 위원회 판단 요지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민원회신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따른 이 사건 시험의 재시험을 시행할 의무도 없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소요비용 변상요구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민사상 청구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구할 수는 없는바, 이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재결결과(각하)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재결일 : 2021. 9. 7.